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DOL은 지역사회 조직에 다양한 서비스 또는 소개를 제공함으로써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긴급 임시 주택
- 음식 및 기타 기본 요구사항
- 미지급된 임금의 복구
- 직무 기술 교육 및 배치
- 이민 및 법률 지원
- 미국 영주권 획득 지원
- 정신 및 신체 건강 서비스
- 상담
- 연방 및 주정부 공공 혜택 이용 지원
- 번역 및 통역
- 인신매매범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려면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 Immigrant Policies and Affairs
(뉴욕주 노동부 이민정책과)

전화: **877-466-9757**
이메일: **trafficking@labor.ny.gov**
웹사이트: **www.labor.ny.gov/immigrants**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국립 인신매매 리소스 센터)

전화: **888-373-7888**

추가 리소스:
폴라리스 프로젝트: www.polarisproject.org

비상시에는 911 번으로 즉시전화하십시오.

WE ARE YOUR DOL

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Department of Labor

@nyslabor | www.labor.ny.gov
1-888-469-7365

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요청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P744K (6/19)

강제 노동은 범죄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WE ARE YOUR DOL

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Department of Labor

강제 노동이란?

강제 노동은 "인신매매"로도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불법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신매매는 누군가가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일하도록 유도할 때 발생합니다.**

폭력: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 폭력 위협 또는 실제로 신체적 폭력 행사.

사기:영주권이나 돈과 관련된 약속 등 인신매매범이 이행 의사가 없이 하는 거짓 약속.

강압: 이민 단속반이나 경찰에 전화하여 범죄를 고발하겠다고 거짓으로 위협하거나 빚을 갚으려면 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누군가를 일하도록 강요하는 위협.

인신매매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갈, 협박, 학대 및 심리전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정서적 학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로자를 모욕하고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비난받게 만듭니다. 또한 인신매매범이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별, 연령 또는 국적을 기반으로 특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신매매범이 근로자를 칭찬하거나, 의존한다고 말하거나, 그들이 돌봐주거나 일자리를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인신매매범들에게 고마운 감정을 갖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 및 통제: 인신매매범은 근로자에게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전화나 카메라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무기를 보여주며 사법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돈을 산발적으로 지불하거나 거의 또는 전혀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재적 인신매매 식별

인신매매는 다음을 포함한 많은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류 공장과 같은 공장
- 농장 또는 조경
- 건설
- 개인 주택(보모나 가정부 등)
- 식당, 바, 호텔 또는 기타 서비스 업종
- 스트립 클럽, 거리 매춘, 가짜 안마시술소, 에스코트 서비스, 매춘업소 등

다음과 같은 경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음
- 자신의 신분증이나 돈을 통제할 수 없음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밖에 못받음
-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노동
- 부채가 많거나 증가함
- 보안 수준이 높거나 카메라가 많은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일함
- 비정상인 불안, 두려움, 복종, 우울, 초조 또는 긴장
- 설명할 수 없는 부상 또는 연장되거나 치료되지 않은 질병의 징후가 있음
-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신체적 구속, 감금 또는 고문의 징후를 보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뉴욕주 노동부의 역할

노동부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미지급 임금 및 불법 공제와 같은 뉴욕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관은 사업체를 출입 및 조사하고 근로자를 면담하고 급여 기록을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부 직원은 잠재적 인신매매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민정책과는 다음을 포함하여 노동부의 인신매매 차단 노력을 조율합니다:

- 뉴욕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 추천
-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특정 중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U 또는 T 비자에 대한 인증 제공
-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봉사활동 발표를 통한 대중의 인식 제고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877-466-9757** 번으로 이민정책과에 전화하거나 **trafficking@labor.ny.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